

2026 생산공정 개선 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

관내 중소벤처기업(제조업) [전자부품, 컴퓨터, 통신장비, 의료기기, 전기.전자 제조, 의류(패션, 섬유), 기계, 원료가공, 제화] 등 대상으로 생산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,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경영.안정화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□ **사업목적** : 관내 제조업의 생산공정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, 품질향상

□ **지원대상** : 성남시 소재 소공인

| 구분 | 상시근로자 수 | 평균매출액 |
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공인 | 10인 미만 | 120억 이하(업종별 상이) * 붙임1 참조 |

□ **지원규모** : 소요자금의 최대 80% 지원, 기업부담 20% 이상

| 구분 | 지원규모 | 지원금액 | 비고 |
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|
| 소공인 | 20개사 | 기업당 최대 15,000천원 | ※ 부가세 제외 ※ 자부담은 현금만 가능 ※ 지원금 비율과 금액은 심사 후 차등 적용 예정 |

※ 기업부담금 내 사업비 정산 수수료 495천원(부가세 포함) 산정 필수(진흥원 지정 회계법인)

□ **지원내용** : 제품의 생산성 증대 및 품질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

- 생산공정 및 품질개선을 위한 사전 진단 설계비용
-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시설/장비 도입 및 안정화를 위한 시험/분석비용
- ※. 생산공정 이외 작업환경 개선 설비(조명, 공사, 환기 등) 지원 불가

□ **지원조건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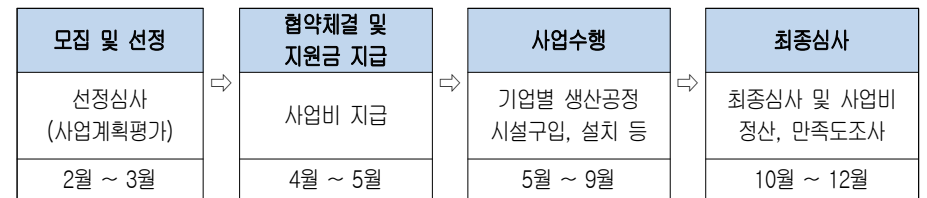
- 협약체결 후 지원금 100% 선 지급
- 사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(보증보험증권 수수료 기업 부담)

□ **사업수행기간** : 선정일 ~ 2026. 9. 30.

2. 모집개요

□ **모집개요**

- 선정규모 : 20개사 내외
- 신청자격
 - 성남 소재 중소벤처기업(본사 또는 공장소재), 소공인(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)
 - 지원업종 : 제조업(전자부품, 컴퓨터, 통신장비, 의료기기, 전기.전자장비 제조, 의류(패션, 섬유), 기계, 원료가공, 제화, 공예 등)
 - ※ 지원업종 해당여부는 [붙임1] 확인
- 제외요건
 - 2025년 생산공정 개선 지원 선정기업 / 연속지원 불가
 - 자격요건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
 - 사업자의 부도, 휴·폐업 기업
 - 지방세 체납 기업
- 평가방법 : 사업계획서 평가(정성평가 100%)
- 결과통보 : (선정, 미선정기업) 개별통보 (이메일)
- 지원 진행절차



□ **신청방법**

- 접수기간 : ~ 2026. 2. 27.(금) 16:00까지
- 접수방법 :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 - 홈페이지(www.snip.or.kr) 접속 후 [사업공고]란에서 해당 공고문 확인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

○ 제출서류 : 신청서 양식 참고<신청서류 자가진단>

□ 문의처 : 혁신성장부 연보라 대리(031-750-2918)

성남산업진흥원장

붙임1

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제8조 제1항)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평균 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|
| 2. 음료 제조업 | C11 |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
| 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
| 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
| 15. 가구 제조업 | C32 |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D | 평균 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|
| 17. 수도업 | E36 | |
| 18. 농업, 임업 및 어업 | A | |
| 19. 광업 | B | |
| 20. 담배 제조업 | C12 | |
| 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
| 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
| 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
| 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
| 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| C22 | |
| 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
| 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
| 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 |
| 29. 건설업 | F |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|
| 30. 운수 및 창고업 | H | |
| 31. 금융 및 보험업 | K |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| G | |
| 33. 정보통신업 | J | |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기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(E36 제외) | 평균 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|
| 35. 부동산업 | L | |
| 36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|
| 37. 사성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| N |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R |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|
| 41. 교육 서비스업 | P |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|
|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S | |

[비고]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
- ‘노란색 음영부분’ 업종(25개)이 소공인 해당 영위 업종이다.